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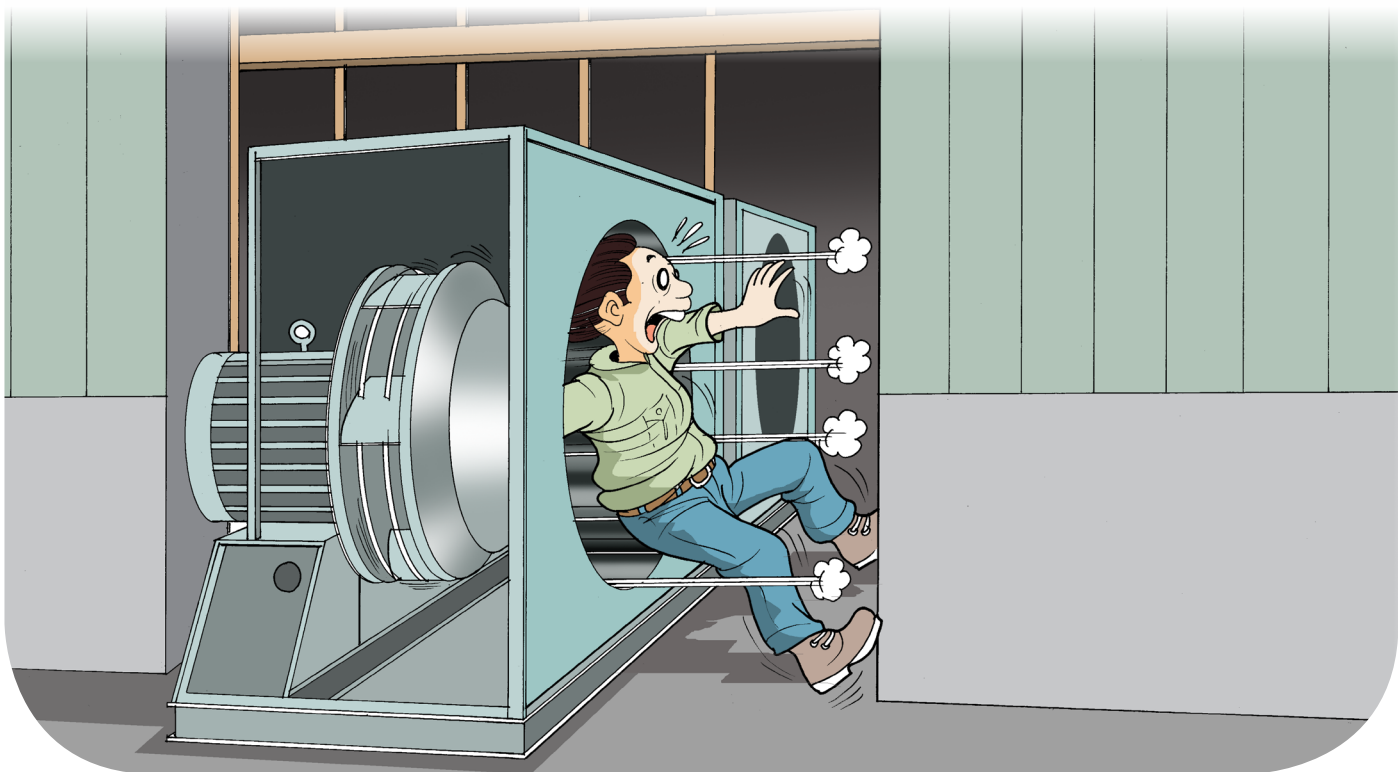
재해사례

(송풍기)

송풍기 시험 장소로 이동 중 끼임



냉방기 부품을 납품하기 위한 작업자가 공장 내에서 제작되어 테스트 중인 발전소 냉각팬 용도의 송풍기 흡입구 앞쪽으로 약 52cm의 출입 공간으로 지나가던 중 송풍기 흡입력에 의해 빨려 들어감



! 재해발생 원인

- 송풍기 시험 작업장소의 작업 관계자와 출입통제 미흡
※ 송풍기 팬 회전수(1450RPM), 풍량(30,000CFM)
- 송풍기 회전 날개에 망 또는 울 미설치

+ 안전작업 방법

TIP

1 송풍기 회전 날개에 망 또는 울 설치

- 송풍기 등의 회전 날개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망 또는 울 설치

2 송풍기 시험 작업장소의 작업 관계자와 출입통제 강화

- 송풍기 시험 작업장소를 작업 관계자와 출입이 안 되도록 구획하고, 구획된 장소에 관계자와 출입통제,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등의 조치 철저





송풍기 시험 장소로 이동 중 끼임

시험 장소에 관계자와 출입제한을 철저히 합니다!

이번 재해는 송풍기 시험 장소를 지나다 팬 흡입력에 말려 1명이 사망한 재해입니다.

외부업체에서 냉방기 부품을 납품하러 왔습니다.



오늘 시험 중인가 본데! 우선 여기 주차해야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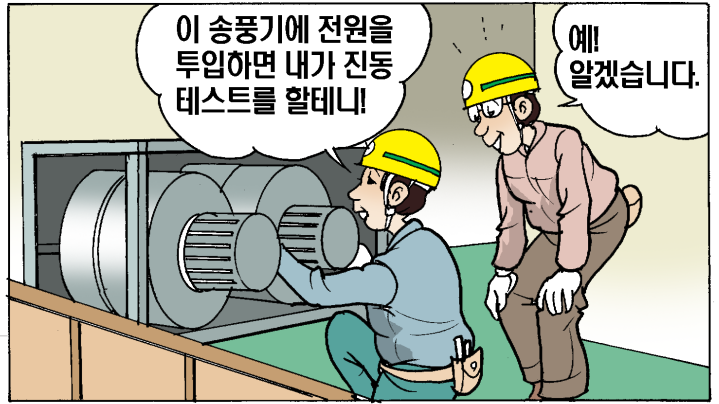


김과장님을 만나야 되는데... 어디로 들어가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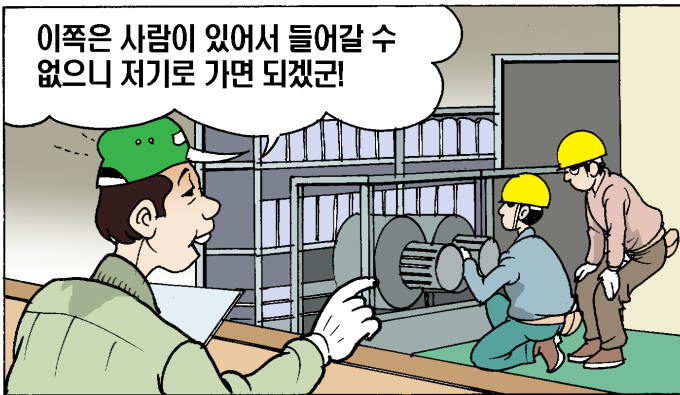


이 송풍기에 전원을 투입하면 내가 진동 테스트를 할테니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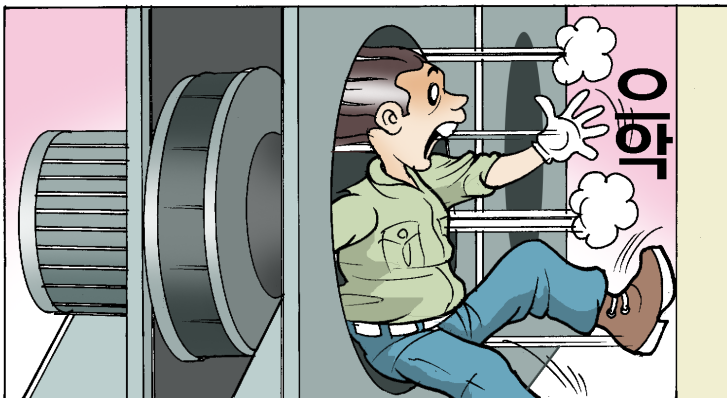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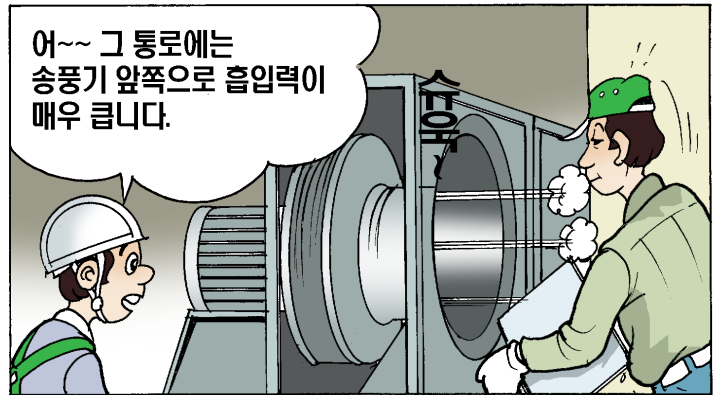
예! 알겠습니다.



이쪽은 사람이 있어서 들어갈 수 없으니 저기로 가면 되겠군!



어~~ 그 통로에는 송풍기 앞쪽으로 흡입력이 매우 큼니다.



시험 등 특정 작업으로 위험이 있는 곳에 관계자와 출입제한 조치가 강화되어야 합니다. 또한, 송풍기 회전 날개에는 망 또는 울을 설치해야 합니다.



참고법령 및 기준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, 제127조(선풍기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)

